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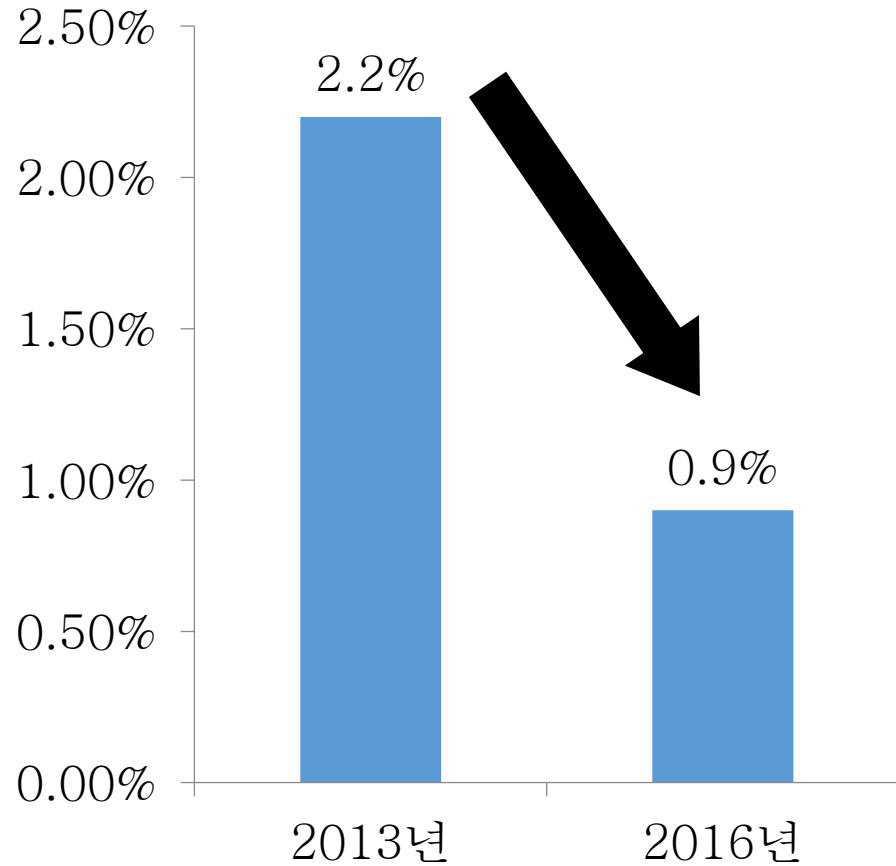
#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청소년권익위원회 ▶ 한재인 외 3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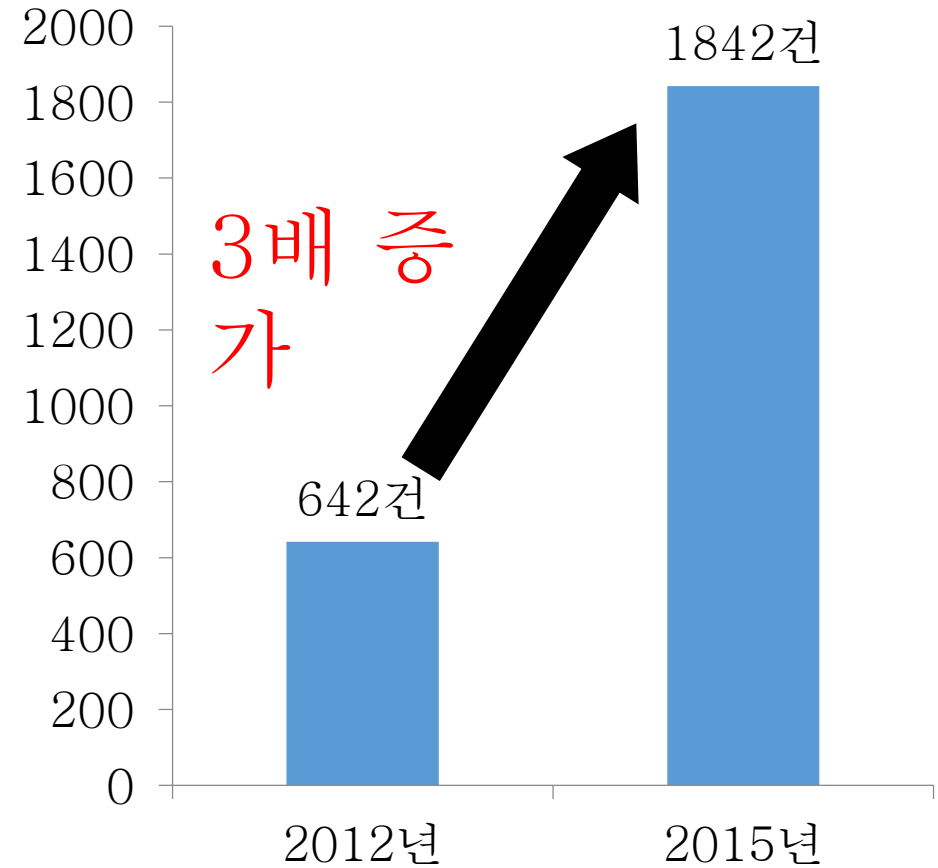


# 제안이유 - 피해학생 비율과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 심의건수

## 피해학생



## 심의건수



## 제안이유 - 교내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사례

초등학교 동창생 여자 B씨의 사진을 알몸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구한 남자 고등학생 A씨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다.



가해자  
A

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망상하고 상상하려고 했다.  
진짜 미안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.



학교폭력  
대책위원회

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 5일, 특별 교육 3일의 징계와,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 2조 1항

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, 모욕, 공갈, 강요, 강제적인 심부름 및 **성폭력**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,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



합의



빈약한 처벌

제 17조 개정



합의



정당한 처벌

## 제 17조 개정

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⑬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교칙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처벌한다. 이 때, 교칙은 위의 17조 1항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▶17조 13항 추가

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- 17조 1항

# 기대효과

---



감사합니다